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따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연도별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안 제4조 [별표1])

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소규모 제작업체의 분류기준 및 기준 완화폭 등을 정함(안 제6조)

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저탄소·친환경차에 대한 실적 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라. 초과달성분의 이월 및 거래 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마.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자동차 산업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함(안 제13조)

환경부고시 제2020- 000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3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8. 31.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차량점유면적”이란 차량의 축거(Wheelbase)와 평균 윤거(Track width)의 곱으로 자동차 네 바퀴가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소규모 제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제작업체 중 해당 연도에 제4항 본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 아닌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업체의 소규모 제작업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

2. 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

제9조 제2항에 제9호부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2대, 2024년에는 1.75대, 2025년에는 1.5대, 2026년에는 1.2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10.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판매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3대, 2024년에는 1대당 2.5대, 2025년에는 1대당 2대, 2026년에는 1대당 1.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로 산정하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초소형자동차는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3을 감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11.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g/km를 감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은 1.33km/ℓ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2.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3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6g/km, 에너지소비효율 1.48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7g/km, 에너지소비효율 1.72km/ℓ

13.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LPG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를 감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6%를 감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4%를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단, LPG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실적 향상분은 15g/k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실적 향상분은 3.7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14.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 중 차량점유면적이 4.8㎡ 이상인 경우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g/km를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2.46km/ℓ를 더하여 산정한다.

15.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작사에서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제11호 내지 제14호 등에 따라 향상되는 실적 증감분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실적 증감분을 더하

여 산정한다. 다만, 위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향상되는 판매대수 증가분의 합은 해당연도에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실제 판매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을 각각 적용한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각 자동차 제작업체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	$\frac{\text{제작사별 해당 연도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10인승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text{제작사별 해당 연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10인승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	$\frac{\text{제작사별 해당 연도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11인승이상15인승이하승합 및 화물자동차)}}{\text{제작사별 해당 연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11인승이상15인승이하승합 및 화물자동차)}}$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5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 ② 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업체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제작업체에서 제외되어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연도 내에 발생한 미달성분을 4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달성 현황,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의 보급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2025년까지 중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 ~ 3) (현행과 같음)

4)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021년 : $40.678 - 0.011168 \times m$ ($m > 1,070\text{kg}$)

28.7 km/L ($m \leq 1,070\text{kg}$)

2022년 : $40.678 - 0.011168 \times m$ ($m > 1,070\text{kg}$)

28.7 km/L ($m \leq 1,070\text{kg}$)

2023년 : $24.4 + 0.008549 \times (1421.8 - m)$ ($m > 1,110 \text{ kg}$)

29.2 km/L ($m \leq 1,110 \text{ kg}$)

2024년 : $25.2 + 0.008808 \times (1496.8 - m)$ ($m > 1,110 \text{ kg}$)

29.7 km/L ($m \leq 1,110 \text{ kg}$)

2025년 : $26.0 + 0.009067 \times (1571.8 - m)$ ($m > 1,110 \text{ kg}$)

30.2 km/L ($m \leq 1,110 \text{ kg}$)

2026년 : $27.0 + 0.009326 \times (M0 - m)$ ($m > 1,110 \text{ kg}$)

31.3 km/L ($m \leq 1,110 \text{ kg}$)

$$2027\text{년} : 27.9 + 0.009585 \times (M0 - m) \quad (m > 1,110 \text{ kg})$$

$$32.4 \text{ km/L} \quad (m \leq 1,110 \text{ kg})$$

$$2028\text{년} : 29.0 + 0.009844 \times (M0 - m) \quad (m > 1,110 \text{ kg})$$

$$33.6 \text{ km/L} \quad (m \leq 1,110 \text{ kg})$$

$$2029\text{년} : 30.9 + 0.010276 \times (M0 - m) \quad (m > 1,110 \text{ kg})$$

$$35.7 \text{ km/L} \quad (m \leq 1,110 \text{ kg})$$

$$2030\text{년} : 33.1 + 0.010707 \times (M0 - m) \quad (m > 1,110 \text{ kg})$$

$$38.1 \text{ km/L} \quad (m \leq 1,110 \text{ kg})$$

여기서, m 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 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5)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2021\text{년} : 23.45 - 0.004089 \times m \quad (m > 1,070 \text{ kg})$$

$$19.1 \text{ km/L} \quad (m \leq 1,070 \text{ kg})$$

$$2022\text{년} : 15.2 + 0.004089 \times (M0 - m) \quad (m > 1,110 \text{ kg})$$

$$19.1 \text{ km/L} \quad (m \leq 1,110 \text{ kg})$$

$$2023\text{년} : 15.4 + 0.004138 \times (M0 - m) \quad (m > 1,110 \text{ kg})$$

$$19.3 \text{ km/L} \quad (m \leq 1,110 \text{ kg})$$

$$2024\text{년} : 15.7 + 0.004212 \times (M0 - m) \quad (m > 1,110 \text{ kg})$$

$$19.6 \text{ km/L} \quad (m \leq 1,110 \text{ kg})$$

$$2025\text{년} : 16.0 + 0.004286 \times (M1 - m) \quad (m > 1,110 \text{ kg})$$

$$20.0 \text{ km/L } (m \leq 1,110 \text{ kg})$$

$$2026\text{년} : 16.0 + 0.004286 \times (M1 - m) \text{ (} m > 1,110 \text{ kg)}$$

$$20.0 \text{ km/L } (m \leq 1,110 \text{ kg})$$

$$2027\text{년} : 16.3 + 0.004360 \times (M1 - m) \text{ (} m > 1,110 \text{ kg)}$$

$$20.4 \text{ km/L } (m \leq 1,110 \text{ kg})$$

$$2028\text{년} : 16.6 + 0.004434 \times (M2 - m) \text{ (} m > 1,110 \text{ kg)}$$

$$20.8 \text{ km/L } (m \leq 1,110 \text{ kg})$$

$$2029\text{년} : 16.9 + 0.004508 \times (M2 - m) \text{ (} m > 1,110 \text{ kg)}$$

$$21.2 \text{ km/L } (m \leq 1110 \text{ kg})$$

$$2030\text{년} : 17.3 + 0.004582 \times (M2 - m) \text{ (} m > 1,110 \text{ kg)}$$

$$21.7 \text{ km/L } (m \leq 1,110 \text{ kg})$$

여기서, m 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 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M1$ 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M2$ 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021\text{년} : 97 + 0.0407 \times (m - 1421.8) \text{ (} m > 1,070 \text{ kg)}$$

$$82.7 \text{ g/km } (m \leq 1,070 \text{ kg})$$

$$2022\text{년} : 97 + 0.0407 \times (m - 1421.8) \quad (m > 1,070 \text{ kg})$$

$$82.7 \text{ g/km} \quad (m \leq 1,070 \text{ kg})$$

$$2023\text{년} : 95 + 0.0399 \times (m - 1421.8) \quad (m > 1,110 \text{ kg})$$

$$82.6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4\text{년} : 92 + 0.0386 \times (m - 1496.8) \quad (m > 1,110 \text{ kg})$$

$$77.1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5\text{년} : 89 + 0.0373 \times (m - 1571.8) \quad (m > 1,110 \text{ kg})$$

$$71.8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6\text{년} : 86 + 0.0361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69.2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7\text{년} : 83 + 0.0348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66.8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8\text{년} : 80 + 0.0336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64.4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9\text{년} : 75 + 0.0315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60.4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30\text{년} : 70 + 0.0294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56.3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여기서, m 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 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마.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

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2021\text{년} : 166 + 0.0407 \times (m - 1920.1) \quad (m > 1,070 \text{ kg})$$

$$131.4 \text{ g/km} \quad (M \leq 1,070 \text{ kg})$$

$$2022\text{년} : 166 + 0.0407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131.4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3\text{년} : 164 + 0.0402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130.8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4\text{년} : 161 + 0.0395 \times (m - M0) \quad (m > 1,110 \text{ kg})$$

$$128.5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5\text{년} : 158 + 0.0387 \times (m - M1) \quad (m > 1,110 \text{ kg})$$

$$126.1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6\text{년} : 158 + 0.0387 \times (m - M1) \quad (m > 1,110 \text{ kg})$$

$$126.1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7\text{년} : 155 + 0.0380 \times (m - M1) \quad (m > 1,110 \text{ kg})$$

$$123.7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8\text{년} : 152 + 0.0373 \times (m - M2) \quad (m > 1,110 \text{ kg})$$

$$121.3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29\text{년} : 149 + 0.0365 \times (m - M2) \quad (m > 1,110 \text{ kg})$$

$$118.9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2030\text{년} : 146 + 0.0358 \times (m - M2) \quad (m > 1,110 \text{ kg})$$

$$116.5 \text{ g/km} \quad (m \leq 1,110 \text{ kg})$$

여기서, m 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0$

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M1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M2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바. 2016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Sigma(\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times \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 \text{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9. <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차량점유면적”이란 차량의 축거(Wheelbase)와 평균 윤거(Track width)의 곱으로 자동차 네 바퀴가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u></p>
<p>제6조(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p> <p>① ~ ③ (생략)</p> <p>④ <u>(신설)</u></p>	<p>제6조(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이하 “소규모 제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u></p>

<p>⑤ (신 설)</p>	<p><u>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 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u></p> <p>⑤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 제작업체 중 해당 연도에 제4항 본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 아닌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체의 소규모 제작업체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u> 2. <u>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u>
<p>제9조(실적의 산정방법)</p> <p>① (생 략)</p> <p>② 1. ~ 8. (생 략)</p> <p>9. (신 설)</p>	<p>제9조(실적의 산정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1. ~ 8. (현행과 같음)</p> <p>9. <u>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2대, 2024년에는 1.75대, 2025년에는 1.5대, 2026년에는 1.2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의 판매실적으</u></p>

10. (신 설)

로 산정한다.

10.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판매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3대, 2024년에는 1대당 2.5대, 2025년에는 1대당 2대, 2026년에는 1대당 1.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로 산정하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초소형자동차는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3을 감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11. (신 설)

11.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g/km를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1.33km/ℓ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2. (신 설)

12.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 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3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13. (신 설)

6g/km, 에너지소비효율 1.48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7g/km, 에너지소
비효율 1.72km/ℓ

13.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LPG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
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를 감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6%를 감하
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4%를 감
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단, LPG자동
차에 대한 온실가스 실적 향상분은
15g/k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
비효율 실적 향상분은 3.75km/ℓ를 초
과할 수 없다.

14. (신 설)

14.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차량 중
차량점유면적이 4.8㎡ 이상인 경우 1대
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0g/km를 감하
여, 에너지소비효율은 2.46km/ℓ를 더
하여 산정한다.

15. (신 설)

15.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작사에서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제11호 내지
제14호 등에 따라 향상되는 실적 증감
분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
되는 실적 증감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향상
되는 판매대수 증가분의 합은 해당연
도에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실제
판매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
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④ ----- 2030년까지 -----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⑤ 1. ~ 2. (생략)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을 각각 적용한다.

⑤ 1. ~ 2. (현행과 같음)

3. -----

-----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각 자동차 제작업체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

<u>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u>	제작사별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제작사별 해당연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u>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u>	제작사별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제작사별 해당연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제10조(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

제10조(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p>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달성 현황,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의 보급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p>
<p>[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p> <p>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p> <p>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p> <p>1) ~ 3) (생략)</p> <p>4) <u>(신설)</u></p>	<p>[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p> <p>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p> <p>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u></p> <p><u>2021년 : $40.678 - 0.011168 \times m$ ($m > 1,070\text{kg}$)</u> <u>28.7 km/L ($m \leq 1,070\text{kg}$)</u></p> <p><u>2022년 : $40.678 - 0.011168 \times m$ ($m > 1,070\text{kg}$)</u> <u>28.7 km/L ($m \leq 1,070\text{kg}$)</u></p> <p><u>2023년 : $24.4 + 0.008549 \times (1421.8 - m)$ ($m > 1,110 \text{ kg}$)</u> <u>29.2 km/L ($m \leq 1,110 \text{ kg}$)</u></p> <p><u>2024년 : $25.2 + 0.008808 \times (1496.8 - m)$ ($m > 1,110 \text{ kg}$)</u> <u>29.7 km/L ($m \leq 1,110 \text{ kg}$)</u></p> <p><u>2025년 : $26.0 + 0.009067 \times (1571.8 - m)$ ($m > 1,110 \text{ kg}$)</u> <u>30.2 km/L ($m \leq 1,110 \text{ kg}$)</u></p> <p><u>2026년 : $27.0 + 0.009326 \times (M_b - m)$ ($m > 1,110 \text{ kg}$)</u> <u>31.3 km/L ($m \leq 1,110 \text{ kg}$)</u></p> <p><u>2027년 : $27.9 + 0.009585 \times (M_b - m)$ ($m > 1,110 \text{ kg}$)</u> <u>32.4 km/L ($m \leq 1,110 \text{ kg}$)</u></p> <p><u>2028년 : $29.0 + 0.009844 \times (M_b - m)$ ($m > 1,110 \text{ kg}$)</u> <u>33.6 km/L ($m \leq 1,110 \text{ kg}$)</u></p> <p><u>2029년 : $30.9 + 0.010276 \times (M_b - m)$ ($m > 1,110 \text{ kg}$)</u> <u>35.7 km/L ($m \leq 1,110 \text{ kg}$)</u></p> <p><u>2030년 : $33.1 + 0.010707 \times (M_b - m)$ ($m > 1,110 \text{ kg}$)</u> <u>38.1 km/L ($m \leq 1,110 \text{ kg}$)</u></p>

가. ~ 다. (생 략)

라. (신 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021년 : $97 + 0.0407 \times (m - 1421.8)$ ($m > 1,070$ kg)

82.7 g/km ($m \leq 1,070$ kg)

2022년 : $97 + 0.0407 \times (m - 1421.8)$ ($m > 1,070$ kg)

82.7 g/km ($m \leq 1,070$ kg)

2023년 : $95 + 0.0399 \times (m - 1421.8)$ ($m > 1,110$ kg)

82.6 g/km ($m \leq 1,110$ kg)

2024년 : $92 + 0.0386 \times (m - 1496.8)$ ($m > 1,110$ kg)

77.1 g/km ($m \leq 1,110$ kg)

2025년 : $89 + 0.0373 \times (m - 1571.8)$ ($m > 1,110$ kg)

71.8 g/km ($m \leq 1,110$ kg)

2026년 : $86 + 0.0361 \times (m - M_0)$ ($m > 1,110$ kg)

69.2 g/km ($m \leq 1,110$ kg)

2027년 : $83 + 0.0348 \times (m - M_0)$ ($m > 1,110$ kg)

66.8 g/km ($m \leq 1,110$ kg)

2028년 : $80 + 0.0336 \times (m - M_0)$ ($m > 1,110$ kg)

64.4 g/km ($m \leq 1,110$ kg)

2029년 : $75 + 0.0315 \times (m - M_0)$ ($m > 1,110$ kg)

60.4 g/km ($m \leq 1,110$ kg)

2030년 : $70 + 0.0294 \times (m - M_0)$ ($m > 1,110$ kg)

56.3 g/km ($m \leq 1,110$ kg)

여기서,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_0 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마. (신 설)

마. 2021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

2021년 : $166 + 0.0407 \times (m - 1920.1)$ ($m > 1,070$ kg)

131.4 g/km ($M \leq 1,070$ kg)

2022년 : $166 + 0.0407 \times (m - M_0)$ ($m > 1,110$ kg)

131.4 g/km ($M \leq 1,110$ kg)

<p>바. 2016년 1월1일부터 <u>2020년</u>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p> <p>$\Sigma(\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times \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text{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p>	<p><u>2023년</u> : $164 + 0.0402 \times (m - M_0)$ ($m > 1,110 \text{ kg}$) <u>130.8 g/km</u> ($m \leq 1,110 \text{ kg}$)</p> <p><u>2024년</u> : $161 + 0.0395 \times (m - M_0)$ ($m > 1,110 \text{ kg}$) <u>128.5 g/km</u> ($m \leq 1,110 \text{ kg}$)</p> <p><u>2025년</u> : $158 + 0.0387 \times (m - M_1)$ ($m > 1,110 \text{ kg}$) <u>126.1 g/km</u> ($m \leq 1,110 \text{ kg}$)</p> <p><u>2026년</u> : $158 + 0.0387 \times (m - M_1)$ ($m > 1,110 \text{ kg}$) <u>126.1 g/km</u> ($m \leq 1,110 \text{ kg}$)</p> <p><u>2027년</u> : $155 + 0.0380 \times (m - M_1)$ ($m > 1,110 \text{ kg}$) <u>123.7 g/km</u> ($m \leq 1,110 \text{ kg}$)</p> <p><u>2028년</u> : $152 + 0.0373 \times (m - M_2)$ ($m > 1,110 \text{ kg}$) <u>121.3 g/km</u> ($m \leq 1,110 \text{ kg}$)</p> <p><u>2029년</u> : $149 + 0.0365 \times (m - M_2)$ ($m > 1,110 \text{ kg}$) <u>118.9 g/km</u> ($m \leq 1,110 \text{ kg}$)</p> <p><u>2030년</u> : $146 + 0.0358 \times (m - M_2)$ ($m > 1,110 \text{ kg}$) <u>116.5 g/km</u> ($m \leq 1,110 \text{ kg}$)</p> <p>여기서,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 M_0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M_1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M_2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판매된 자동차(경형자동차포함)의 평균 공차중량 값을 말한다.</p> <p>바. 2016년 1월1일부터 <u>2030년</u>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p> <p>$\Sigma(\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times \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text{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u></p>